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2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김재원 · 강경숙 · 서왕진
황운하 · 신장식 · 정춘생
박정현 · 이해민 · 박수현
김준형 · 송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사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가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③</u> (생략)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④</u>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u>⑤</u> 제3항----- ----- ----- ----- ----- -----.
<u>⑤</u>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u>제11조제3항</u> 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① ----- ----- ----- -----제11조제4항----- -----

